24. 12. 16. 오후 2:07 인쇄

검사과정 및 지참물

과정, 절차, 지참물

병역판정검사 과정

심리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정밀검사 대상자 선별
신체검사	각 부위별 건강정도검사, 신체등급 판정 (1급~7급) ※ 신체등급 5,6급 대상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정밀검사후 신체등급 확정. 다만 질환 가 명백한 일부 질환의 경우는 중앙병역판정검사를 생략하고 지방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에 신체등급 확정.
적성분류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적성 분류
병역처분 (신체등급 기준)	1~3급 : 현역병 입영대상 4급 : 보충역 5급 : 전시근로역 6급 : 병역면제 7급 : 재신체검사

[※]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받게되며 소요시간은 약 4시간 정도입니다

병역판정검사 절차

병역판정검사대상등록 & 신상명세서등록 \rightarrow 심리검사 \rightarrow 방사선 촬영 \rightarrow 임상병리 검사 \rightarrow 혈압 측정 \rightarrow 신장체중, 시력 측정 \rightarrow 각 과목 검사(안과,피부&비뇨의학과,신경·정신건강의학과,이비인후과,치과,정형외과,신경외과,내과) \rightarrow 신체등급판정 \rightarrow 적성분류 \rightarrow 병역처분

시력측정은 나안상태(안경 및 렌즈 미착용)에서 측정하고 있어 렌즈보다 안경 착용이 편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지참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자격 또는 면허증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 (선천성 또는 질병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1년 이내 발행) 〈아래의 경우 비지정병원 발행 가능〉 - 수술한 경우 - 병원급 비지정병원: 7일이상 입원치료 및 계속하여 3개월이상 통원치료한 경우 - 의원급 비지정병원: 1개월이상 입원치료 및 계속하여 6개월이상 통원치료한 경우 - 법정 감염병 질환자는 보건소(보건의료원, 질병관리청 포함)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 포함)도 가능 ※ 병무용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3.5cm*4.5cm 또는 여권용 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사진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의료기관별 진단서 발급 관련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방문예정 의료기관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4. 12. 16. 오후 2:07 인쇄

대상	지참물		
	참고되는 진료기록지 및 방사선 필름 과목.질환별 구비서류(확인 필수) <u>바로가기</u>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병무용진단서 첨부제외 진단서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확인 필수) <u>바로가기</u>		
수형자	판결문사본, 수용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전 · 공상가족	가족관계 등록부(제적등본) 지방보훈(지)청장발행 국가유공자 증명서		

병역판정검사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922 02-820-4380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2
부산울산지방병무청	051-667-5279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92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79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77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79	인천병무지청	032-454-24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37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31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2